

# 이리신흥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심의(안)

안 건 번호	1
-----------	---

발의연월일 : 2019.8.27.

제 안 자 : 학 교 장

담 당 자 : 교사 안진주

## 1. 제안이유

### ◦ 개정 근거

초·중등 교육법 제8조(학교 규칙)

① 학교의 장(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)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.

### ◦ 개정의 필요성

: 개정된 초·중등교육법 8조, 시행령 제9조의 내용을 학교규칙 및 학생 생활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### ◦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의 목적

: 이리신흥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으로 원활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함

### ◦ 개정 절차

: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- 개정안 발의- 민주적 의견수렴(학부모, 학생, 교원)-최종 시안- 입안 예고-학교운영위원회 심의(최종안 확정)-공포 및 정보공시

## 2. 주요 골자

### ◦ 심의할 내용

-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의 적절성 여부